

대전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나102288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청구]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나102288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 18 선고 2016가단10089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단체

피고, 피항소인 대미륵봉심회

변론 종결 2017. 12. 13.

판결 선고 2018. 2. 21.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 18. 선고 2016가단10089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B 임야 19,83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8. 12. 31. 접수 제82304호로 한 대미륵봉심회의 2-1번과 2-2번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영화

판사조민혜

판사박형민